

## 03 ‘근로자 건강증진활동’ 이란?

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.  
(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-6 호)

### 「노·사주도 건강증진활동」 비용지원 사업

#### Q 대기업 소속 단위사업장의 규모가 300만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나요?

>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(공공기관)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※ 기업집단 소속회사 확인방법 · 공정거래위원회(www.ltc.go.kr) ▶ 기업집단정보포탈 ▶ 대규모기업집단 ▶ 지정현황 ▶ 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

#### Q 지원한도 금액이 사업장(연합체) 단위인가요? 프로그램단위 인가요?

> 지원한도는 사업장(연합체) 단위 기준입니다. 프로그램 운영 숫자와는 별개로 사업장(연합체) 단위 한도입니다.

#### Q 단체 소속 사업장 규모도 제한이 있나요?

>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3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. 단, 신청상의 편의를 위해 연합체의 개념이 도입된 것입니다. 연합체의 경우도 300인 미만 사업장들이 모여진 연합체가 대상입니다.

#### Q Type1-2(협력업체 지원형)인 경우, 규모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?

① 모기업 규모가 300인 이상이고 각 협력업체 근로자수의 합이 300인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?

>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활동만 대상이 됩니다.

※ 모기업이 300인 이상이므로 모기업 근로자에 대한 활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, 모기업은 관리를 해주는 역할만 수행합니다.

② 모기업 규모가 300인 미만이고 각 협력업체 근로자수의 합이 300인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?

> 모기업이 300인 미만이므로 모기업과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활동 모두가 지원대상입니다.

## 04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나요?

### 접수기간 및 기타

#### ■ 접수기간

- 2014. 2월 ~ 재원 소진 시 까지(연중 접수)

#### ■ 제출서류

-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서(제안서 및 예산집행 계획서) 1부 제출
- 신청서식은 공단 홈페이지([www.kosha.or.kr](http://www.kosha.or.kr))
- 문의처 및 접수처 : 공단 지역본부



### 지역본부 주소 및 연락처

#### 서울지역본부

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14~15층  
Tel : 02-828-1674

#### 부산지역본부

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(부곡동 64-31)  
Tel : 051-520-0586

#### 대구지역본부

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9~20층  
Tel : 053-609-0540

#### 중부지역본부

인천시 서구 한빛로 15(가정동 491)  
Tel : 032-570-7261

#### 광주지역본부

광주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(광주무역회관빌딩 8층)  
Tel : 062-949-8757

#### 대전지역본부

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(문자동)  
Tel : 042-620-5634

※ 상세내용은 공단 홈페이지([www.kosha.or.kr](http://www.kosha.or.kr))에 게시된 ‘비용지원 계획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# 2014년도 노·사주도 건강증진활동

# 비용지원 안내

건강한  
근로자가 기업의  
경쟁력입니다.



## 노·사주도 건강증진활동

# 비용을 지원합니다!

노·사가 함께 자율적으로 「근로자 건강증진활동」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### 신청자격

작업관련성질환예방을 위하여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노사주도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장

- ① 최근 5년 이내 작업관련성질환자 발생사업장(신청일 기준)
- ② 일반건강진단결과 질병 유소견자, 요관찰자 다발 사업장
- ③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자 발생사업장
- ④ 감정업무 수행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사업장
- ⑤ 야간작업, 고대작업, 감정노동 근로자 다수 근무사업장
- ⑥ 취약계층(장년, 여성, 비정규직) 다수 근무사업장
- ⑦ 지역본부장(지방노동관서의장)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



## 01 신청요건은 어떻게 하나요?

### 사업장

- ▶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(이하 '노조')이 있는 경우
  -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
- ▶ 노조원수가 전체 근로자수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경우
  -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
- ▶ 협력업체 지원형(Type1~2)인 경우
  - 상호협의하여 모기업에서 신청

### 연합체

- ▶ 기 구성되어 있는 업종(지역) 단위의 연합체인 경우
  - 구성된 각 사업장의 노사대표가 합의하여 연합체 명의로 신청
- ▶ 본 사업참여를 위해 구성된 업종(지역) 단위의 연합체인 경우
  - 구성된 사업장 중 대표사업장을 선정하여 연합체 명의로 신청

### 형태별 건강증진활동 지원모델

지원모델	구성의 예	추진형태
Type 1 (사업장)	Type 1-1 (사업장 단독추진형)	300인 미만 단위 사업장
	Type 1-2 (협력업체 지원형)	모기업과 동일지역에 속한협력업체 사업장
Type 2 (연합체)	Type 2-1 (유사업종 연합형)	택시조합, 화물자동차 조합, 음식업협동조합 등의 소속 사업장 등
	Type 2-2 (지역 연합형)	산업단지 입주업체 협의회, 지역단위의 중소 기업단체 소속사업장

## 02 지원내용 무엇인가요?

### 지원대상 건강증진활동

모든 지원대상 건강증진활동은 업무적요인과 개인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작업관련성질환예방활동에 한함

- ① 작업관련성 뇌심혈관질환예방 활동
- ② 조직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생활습관개선 활동
  - ※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생활습관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
- ③ 감정업무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관리 활동
- ④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예방 활동
- ⑤ 일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상담 및 업무적합성 평가

### 공단 지원사항

건강증진활동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

- ▶ 전문가 상담료, 강사료, 기자재 임차료, 장소임차료, 보조제 구입비(금연보조제 등), 전문교육과정 참가비, 교재제작비, 홍보물제작비 등 사업공고시에 제시하는 항목
  - ※ 단, 자산취득비용 · 현물제공비용 · 재료비 구입 등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  - ※ '예산단가(집행) 가이드라인'은 홈페이지 참조

### 지원한도

구 분	사업장(연합체) 규모		
	50명 미만	50~300명 미만	300명 이상
지원한도	160 만원	700 만원	2,000 만원

- 300명 이상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-